

# 논문·작품에 관한 내규

2003.09.01 제정  
 2016.03.01 개정  
 2018.01.04 개정  
 2018.05.01 개정

**제1조(석사학위 논문·작품 제출 자격)** 석사학위 논문·작품(이하 논문·작품)심사본 제출 자격은 3학기를 마친 자로서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제1조의2(조기졸업자 논문·작품 제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3학기에 심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제2조(논문·작품 신청)** ①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3학기 수강 신청 시 논문과정 혹은 작품과정중 하나를 선택한다.  
 ②논문과 작품의 명칭은 각 과별로 다음과 같다.

<영어교육융합학과>

세부전공		국문	영문
TESOL전공	논문	석사학위 논문	Thesis, MA in TESOL
	작품	석사학위 작품	Project, MA in TESOL
영어교재개발전공	논문	석사학위 논문	Thesis, MA in ELT Materials Development
	작품	석사학위 작품	Project, MA in ELT Materials Development

③논문·작품 대체 인정 신청자는 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 유형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한다.

④수강 신청은 본 내규 제3조의 지도 교수 신청 후 지정된 지도 교수별로 한다.

**제3조(지도 교수 배정)** ①2학기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논문·작품 작성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지도 교수 배정을 신청 한다. 지도 교수의 배정은 학내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지도 교수 배정 결과는 해당 학기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공지한다.

**제4조(논문·작품 작성 계획) (삭제)**

**제5조(논문·작품 지도)** ①지도 교수는 본교 재직 교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 주제 분야를 고려하여 타 대학의 전임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를 지도 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지도 교수의 퇴직, 휴직, 파견근무 및 학생 논문·작품의 연구 주제 변경 시 학내 사정을 고려하여 지도 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논문·작품 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논문·작품 지도 교수 변경원(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④-1수업연한을 마치고 논문·작품을 작성하는 수료자는 본인이 논문·작품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매 학기 40만원의 논문·작품 지도비를 납부한다.

⑤(삭제)

⑤-1

**제6조(논문·작품 중간 발표)** ① 3학기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논문·작품 중간 발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논문·작품 발표 계획서 (별지 제 4-1호 서식)를 제출하고 논문·작품 중간발표를 한다.

② 논문·작품 대체 인정 판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자의 ‘논문 연구 1’ 또는 ‘작품 연구 1’의 성적은 ‘F 등급’으로 처리한다. 단, 학사관리규정 제 8장 제 30조에 의거하여 공결 인정을 받은 경우나 이에 상응하는 응급 상황으로 중간 발표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사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간발표를 수행하고 해당 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논문·작품 심사본 제출)** ①석사학위 청구 논문·작품의 심사본은 석사학

위 취득 예정 학기 학사력에 정해진 기일까지 지도 교수를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3부의 석사학위 논문·작품 심사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작품 제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한다.

①해당 학과장과 지도 교수가 협의하여 논문·작품 분야에 적합한 외부 교수 또는 전문인사 1인을 포함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 논문·작품 지도 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9조(논문·작품의 심사)** ①제출된 논문·작품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석사학위 청구 논문·작품 심사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논문·작품 심사는 합격, 수정 후 합격, 재심사로 판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합격 또는 수정 후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최)우수 논문·작품 심사 대상자가 되며 대상자는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최)우수 논문·작품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다. (최)우수 논문·작품 심사는 각 유형별로 2인의 내부 교수가 담당한다. 단, 심사본 중 (최)우수에 해당하는 논문·작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 후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도 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학칙 3장 제 9조에 의거하여 재학연한 내에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3부의 논문·작품 재심사본을 소정의 재심사료와 함께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재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작품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석사학위 청구 논문·작품 재심사표(별지 8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학과장은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삭제)

⑥ 재심사에서 수정 후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도 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학과장은 최종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⑨ (삭제)

⑩ 논문·작품 심사위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논문·작품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9조의2(논문·작품 대체 인정 심사)** ①본인의 저작물을 논문·작품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논문·작품 대체 인정 신청서(별지 제16-2호 서식)와 함께 대체 인정물을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대체 인정물은 연구가 완료된 최종본을 말하며 각 인정 영역별 최종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대체	가. 논문 게재	게재된 논문 사본
		나. 영어교육전문서 출간	출판이 완료된 해당 저작물
		다. 영어교육전문서 번역	출판이 완료된 해당 저작물
2	작품 대체	가. 영어교재 및 콘텐츠 출판	출판이 완료된 해당 저작물
		나. 영어교육 프로그 램 기획 및 운영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③각 대체 인정물의 최종본에는 대체 인정자의 소속정보가 본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교 입학 후에 시작한 연구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논문·작품 인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대체 인정물을 접수한 뒤 2주 이내에 본인에게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대체 인정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 학기부터 논문·작품 지도를 면제 받는다. 수정 후 대체 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학사력에 정한 기일까지 재심의본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의3(논문·작품 대체 인정)** ①아래의 경우에는 학과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대체인정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논문·작품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논문 대체 인정 범위

가. 본교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영어 교육 관련 논문을 게재한 경우  
(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저)

나. 영어교육 관련 전문서를 출간한 경우(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저,  
단 본교 교원을 포함하는 경우 3인까지 공저가 가능함.)

다. 영어교육 관련 전문서를 번역하여 출간한 경우(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저)

2. 작품 대체 인정 범위

가. 영어 교재를 출간한 경우(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저, 단  
본교 교원을 포함하는 경우 3인까지 공저가 가능함.)

나. 영어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② 공저자나 공동 발표자 수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단일 저자와 단일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며 그 자격은 본교 교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제한한다.

**제10조(심사 완료)** 지도 교수가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수정·보완 또는 인 쇄상 결함 유무를 확인, 검토한 후 심사위원과 지도교수가 인준서에 날인 함으로써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최종본 제출)** ①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논문·작품 최종본을 학사력 에 정한 기일까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제출시 제출확인서(별지 제 9호 서식)와 저작물 이용허락서(별지 제11 호 서식)를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수료자 논문·작품 심사)** 본교에서 4학기를 마치고 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는 수료 후 2년까지 논문·작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봄학기부터 시행하며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봄학기부터 시행하며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 논문 심사비 지급 기준표

	분류	내역	비고
1	본심사	내부위원 50,000원 X 2인 외부위원 150,000원 X 1인	학생 1인당
2	재심사	내부위원 30,000원 X 1인 외부위원 60,000원 X 1인	지도교수는 해당되지 않음
3	(최) 우수 논문 작품 심사	30,000원	심사본 1편당